

환경부 공고 제2011-236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2011년 6월 17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, 샘물 등의 수량·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·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계측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며,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, 품질관리교육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,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설치·관리 강화(안 제8조).

- (1)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물을 마시고 있으나, 일부 정수기는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- (2) 다중이용시설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·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, 정수기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·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.
- (3)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될 것임.

나. 샘물등의 수량·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·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22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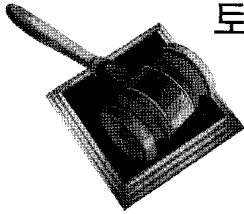
- (1)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샘물등의 수량·수질 자동계측기를 설치·운영토록 하고 있으나, 이에 관한 세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음.
- (2)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샘물등의 수량·수질 자동계측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.
- (3) 샘물등의 수량·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·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, 샘물 등의 수량·수질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임.

다.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(안 제31조).

- (1)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규정 미비로 민원인과 부과기관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.
- (2)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받은 자는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부과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함.
- (3) 수질개선부담금을 잘못 부과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민원인과 부과기관 간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.

라. 먹는물관련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개선(안 제48조).

- (1)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부적합 먹는 샘물 등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 제품의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라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해 음.
- (2) 법률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.
- (3) 법률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.



환경부 공고 제2011-232호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1년 6월 24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「토양환경보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10551호, 2011. 4. 5. 공포, 2011. 10. 6. 시행)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토양정밀조사 지역 규정(안 제4조).

- (1)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철도시설, 국방·군사시설 등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.

나.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(안 제5조의2).

- (1)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.

다. 정화비용의 부담 규정(안 제5조의3).

- (1)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.

라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조정(안 제12조제2항관련 별표4).

- (1)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.
- (2)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인 경우 다음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.
- (3)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 우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마. 누출검사대상시설 인정에 대한 절차 및 서식 신설(안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3).

바.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환경평가, 위해성평가기관이 신설됨에 따른 지정신청 등 서식 변경(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).

사. 토양오염기준 중 "BTEX" 항목이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크실렌으로 변경('10. 1)됨에 따른 서식 변경(별지 제19호 내지 제20호).

아.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규정(안 제19조의3).

- (1)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오염원인가자 오염범위, 누출평가결과, 위해도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고,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 등을 규정

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 » 법령·정책 » 법령정보 »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